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생계·의료·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,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 서비스 의뢰 및 연계와 관련한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,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서비스연계 및 의뢰) 법 제35조 1항에 따른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~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</u> <u>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</u> <u>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</u> <u>등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</u> <u>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</u> <u>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서비스연계 및 의뢰)</u> <u>법 제35조 1항에 따른 서비스</u> <u>의뢰 및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</u> <u>급여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</u> <u>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</u> <u>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</u> <u>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.</u>